부산우편집중국 공고 제2026-73호

2026년 제7회 부산우편집중국 기간제 우정실무원 채용 공고

부산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 소통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우정실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부산우편집중국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인원	근무형태	근무기관	담당업무
우정실무원 (기간제)	1명	중근전일제 (12:00~21:00)	부산우편집중국 (부산시 강서구)	- 국제우편물 X-Ray 검색기 투입 보조 - 2차 검색 완료 우편물 적재 및 발송 작업 - 기타 우편물 구분·소통 관련 부수 업무

2. 근무 조건

가. 신분 : **기간제 근로자(비공무원)**

나. 계약기간 : **채용일**(2026.11.16. 예정) ~ 2027. 3. 30.

다. 보 수 : 기본급 + 수당

- ㅇ 기본급 : 일급 82,560원
- ㅇ 수당 :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위험수당, 주휴수당, 가족수당 등
- ㅇ 실적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ㅇ 기타 : 사회보험 가입,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월~금) 근무, 휴게 1시간

마. 휴가 :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등

바. 업무특성 : 최대 30kg 국제우편물을 X-ray 검색기에 투입, 적재, 발송하고, 무게 500kg 이상 하는 운송용기(롤파렛, 평파렛)를 차량에 상·하차하며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체력과 정보화 능력 필요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나.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복수국적자 및 외국인은 응시 불가)이고 주민등록상 부산·울산·경남지역 거주자(단, 출·퇴근이 가능한 자)

다. 응시자격 제한

ㅇ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 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ㅇ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시험 방법

시험단계 / 채용분야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기간제 우정실무원	서류전형	면접시험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 서류구비 여부 및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서류 접수

가. 모집공고 : 2026. 10. 19.(월) ~ 10. 28.(수)

※ 부산우편집중국, 우정사업본부, 고용24 홈페이지 게시

나.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8.(수) 18:00까지**

다. 원서교부 :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라. 접수방법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방법은 **고용24 콜센터(1577-7114)** 문의

※ 최종 접수 여부는 마이페이지 - 입사지원 관리 - 알선/입사지원 내역에서 반드시 확인,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접수시 PDF · JPG 파일(성명_서류명)로 첨부**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제출(온라인 첨부가 어려울 경우)

※ 등기우편 제출

- 접수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49번길 11, 부산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 채용담당자 앞 구비서류 재중 우편번호 : 46700
- 등기우편 제출은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익일특급)까지 유효함

※ 전자우편 제출 : tax60007560@korea.kr

※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30.(금)**

나. 면접시험 : **2026. 11. 4.(수)**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5.(목) 14시 이후**

라. 채용예정일 : 2026. 11. 16.(월)

마.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부산우편집중국 홈페이지에 게시

바. 면접시험의 장소 및 시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예정일은 채용점검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붙임1】

ㅇ 최종 합격자에 한해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합격을 취소함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2】

다.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3】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작성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필수기재 사항, 작성일자, 자필 서명, 자기소개서 각 란 작성 등 유의)

※ 각 서류는 기본인쇄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모아찍기, 양면인쇄 접수 불가)

8.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부산우편집중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채용신체검사(마약류포함), 특수건강검진(방사선)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산우편집중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ㅇ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부산우편집중국 방문신청, 팩스(0505-005-1549) 또는 이메일(tax60007560@korea.kr),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ㅇ 부산우편집중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라. **기간제 우정실무원은 비공무원이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27. 3. 30.까지 근무합니다.**

마. 우정실무원(해당 직종에 한함) 근무경력은 향후 우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됩니다.

바.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같을 경우는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재공고했음에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예비합격자(선발인원의 100분의 30 범위 내, 소수점 이하는 1명) 중에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051-600-5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우편집중국장 귀하

공지사항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